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4168
등록일자	2016.6.30.
결재일자	2016.6.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상은	조춘식	김구연	06/30 김효길		
협조자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계획



관련근거

- 서울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34조(정관의 변경)

강남복지재단 2016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완료

- 일 시 : 2016. 6. 13.(월) 17: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4명(재적이사 13명 중 12명, 감사 2명)

정관변경 주요내용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조항 변경
- 제5조(사업) 제1항 강남구 위탁사업 수행 근거조항 신설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6조(임원의 임기 및 연임절차)
 - 조례 내 임원의 종류변경에 따라 정관 내 관련 임원조항 변경
 - 임원의 연임절차 조항 신설
- 제17조(임원의 선임), 제17조의1(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9조(임원의 직무)
 - 임원의 신규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조항 신설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 상임이사 임명절차 및 직무조항 신설
- 별지 『재산목록』 기본재산 증액변경(4,020,750천원⇒ 5,103,993천원)

2016. 1. .

강 남 구
(복 지 정 책 과)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남복지재단 정관 																											
추진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근거에 의거 추진 																											
예산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강남구민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계획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및 관련 법령에 적합토록 정관변경을 승인하여 합리적으로 강남복지재단을 운영코자 함

I

관련근거

- 서울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2.27.>
-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34조(정관의 변경)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I

재단 승인요구(안)

- 강남복지재단 2016년 제2차 이사회 개최 완료
 - 일 시 : 2016. 6. 13.(월) 17: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4명(재적이사 13명 중 12명, 감사 2명)
 - 안건의결 :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외 4건
 - 의결정족 : 재적이사 2/3이상 찬성
 - 안건처리 : 심의2건 원안가결, 보고2건 보고완료, 심의1건 수정가결

□ 정관변경 주요내용 및 사유

해당조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 강남구 봉은사로 471 ⇒ 강남구 봉은사로 320	○ 재단의 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제5조 제1항 (사업)	○ 강남구 위탁사업 수행 근거 조항 신설	○ 위탁사업 수행의 근거 마련
제15조 (임원의종류와정수) 제16조 (임원의 임기 및 연임절차)	○ 임원종류 조항 변경 ○ 임원의 연임절차 조항 신설	○ 조례내 임원의 종류변경에 따라 정관 내 임원 조항도 조례와 부합하도록 변경 ○ 임원의 연임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임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
제17조(임원의 선임) 제17조의1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9조(임원의 직무)	○ 임원의 신규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조항 신설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 상임이사 임명절차 및 직무조항 신설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단 임원 임용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제고 ○ 상임이사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효율성 향상
별지 『재산목록』	○ 기본재산 증액 변경 : 4,020,750,000원 ⇒ 5,103,993,000원	○ 기본재산 적립을 위한 지정기탁 기부금의 증액에 따라 정관의 재산목록 사항 증액 변경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목적) ① 법인은 <u>강남구의</u>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강남구와 자매결연·우호협정·교류협력 등을 맺은 단체 등과 복지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목적)①--<u>서울특별시강남구(이하“강남구”라한다)</u> ----- ----- ----- -----</p>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u>471(삼성동 50-2)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상가동 304호, 305호</u>에 둔다.</p>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 -----<u>320(역삼동 681-43)</u> <u>강남구비즈니스센터2층</u> -----</p>
<p>제5조(사업) ① (생략) 1.~7. (생략) 8.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p>	<p>제5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u> 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생략) 1. (생략) 2. 이사 15인 이내(<u>이사장1인 포함, 비상임</u>) 3. (생략) 4. <신설> ② (생략)</p>	<p>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이사장, 상임이사 포함</u>) 3. (현행과 같음) 4. 상임이사 1인 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임원의 임기) ① <u>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1.~3. (신설) ② (생략) ③ (생략)</p>	<p>제16조(임원의 임기 및 연임절차) ① <u>이사 및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비상임 이사가 연임시에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가 연임시에는 이사회에서 연임여부 심의 후 이사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u> <u>2. 감사가 연임시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② <u>이사장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u></p> <p>③ <u>당연직 이사는 선임 없이 강남구의 법인 소관국장이 되며, 당연직 감사는 강남구의 감사담당관이 된다.</u></p> <p>④ <u>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제17조(임원의 선임) ① <u>이사장은 비상임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u></p> <p>② <u>선임직 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구청장이 임명한다.</u></p> <p>③ <u>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 당연직 감사는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한다.</u></p> <p>④ <u>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u></p> <p>⑤ <u>상임이사는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법인의 공모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u></p> <p>⑥ <현행 제4항과 같음></p>
<p><신 설></p>	<p>제17조의 1(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u>법인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u> 2. <u>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u> 3. <u>법인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u> <p>② <u>구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p> <p>③ <u>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영전문가</u> 2. <u>사회복지전문가</u> 3. <u>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u> 4. <u>공인회계사</u> 5. <u>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u> 6. <u>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u> <p>④ <u>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인의 내규로 정한다.</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임원의 직무) ①~③ (생략) 1.~5. (생략) <신설> <신설></p>	<p>제19조(임원의 직무) ①~③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에서 집행하기로 결정된 사항과 이사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5. (생략)</p>	<p>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생략)</p>	<p>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 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법인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사무국의 직제에 의한 선임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략) ⑥ (생략)</p>	<p>제30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상임이사 ----- ----- ④ 상임이사는 ----- ---, 상임이사가 -----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p>																																																								
<p>제33조(위원회 설치) ① 법인은 제3조 및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p>	<p>제33조(위원회 설치) ① --- 제3조, 제5조, 제14조 및 제1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p>																																																								
<p>[별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산구분</th> <th>취득원인</th> <th>평가액(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현금</td> <td>강남구출연금</td> <td>2,000,000,000</td> <td></td> </tr> <tr> <td>현금</td> <td>강남구출연금</td> <td>408,150,000</td> <td>민간후원금</td> </tr> <tr> <td>현금</td> <td>강남구출연금</td> <td>1,251,600,000</td> <td>민간후원금</td> </tr> <tr> <td>현금</td> <td>민간후원금</td> <td>361,000,000</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4,020,750,000</td> <td></td> </tr> </tbody> </table>	재산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현금	강남구출연금	408,150,000	민간후원금	현금	강남구출연금	1,251,600,000	민간후원금	현금	민간후원금	361,000,000			<신설>			합계		4,020,750,000		<p>[별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산구분</th> <th>취득원인</th> <th>평가액(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현금</td> <td>강남구출연금</td> <td>2,000,000,000</td> <td></td> </tr> <tr> <td>현금</td> <td>강남구출연금</td> <td>408,150,000</td> <td>민간후원금</td> </tr> <tr> <td>현금</td> <td>강남구출연금</td> <td>1,251,600,000</td> <td>민간후원금</td> </tr> <tr> <td>현금</td> <td>민간후원금</td> <td>361,000,000</td> <td></td> </tr> <tr> <td>현금</td> <td>민간후원금</td> <td>1,083,243,000</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5,103,993,000</td> <td></td> </tr> </tbody> </table>	재산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현금	강남구출연금	408,150,000	민간후원금	현금	강남구출연금	1,251,600,000	민간후원금	현금	민간후원금	361,000,000		현금	민간후원금	1,083,243,000		합계		5,103,993,000	
재산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현금	강남구출연금	408,150,000	민간후원금																																																						
현금	강남구출연금	1,251,600,000	민간후원금																																																						
현금	민간후원금	361,000,000																																																							
	<신설>																																																								
합계		4,020,750,000																																																							
재산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현금	강남구출연금	408,150,000	민간후원금																																																						
현금	강남구출연금	1,251,600,000	민간후원금																																																						
현금	민간후원금	361,000,000																																																							
현금	민간후원금	1,083,243,000																																																							
합계		5,103,993,000																																																							

Ⅲ

재단요구안 검토 결과

정관변경 주요조문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적정(승인)
- 제5조(사업) 적정(승인)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6조(임원의 임기 및 연임절차) 적정(승인)
- 제17조(임원의 선임), 제17조의1(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9조(임원의 직무) 적정(승인)
- 제3조(목적) 외 기타 조항 적정(승인)

별지 기본재산 변경 적정(승인)

Ⅳ

행정사항

-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 결과 통보 복지정책과
- 정관변경에 따른 서울시 승인요청 강남복지재단